

사전 동의

“그렇게 해서는 기사 쓰기 어렵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 확인보다 당사자 동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이든, 음성이든, 사생활이든 당사자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의학·과학과 같은 다른 공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뜻이다.

전에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아내가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모진 진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산모 옆에서 호흡을 돕다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분만실을 나와 밖에서 대기했다. 바로 그때, 옛된 얼굴에 의사 가운을 입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분만실로 들어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습 나온 그 대학 의대생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병원 측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 그 후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게 됐다. 전문의 양성, 의학 발전은 충분히 공익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환자 개인의 의사쯤은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사안의 심각성은 다르지만 이러한 의문이 현실에서 제기된 예는 또 있다.

1950년대 미국의 저명한 암 연구자였던 체스터 사우샘은 살아있는 암세포를 몇 년에 걸쳐 6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입했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가량은 암

환자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간단한 암 검사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방식에 대해 사우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들이 암세포인가 아닌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세포는 이질적인 것으로 곧 면역체계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별 상관도 없는데 괜히 감정적인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환자에게 숨기는 것은 말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진료 현장의 탁월한 전통이라 하겠습니다.”¹⁾

당당했던 사우샘의 말처럼 그의 연구는 암 백신 개발에 이바지함으로써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에게 유익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미하며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는 개인의 의사보다는 암 연구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그 결과, 이 일로 인한 사우샘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

물론, 다른 결과도 있다. 작년 11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연고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시체를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체해부법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2012헌마940).

무연고자의 시체가 의대 해부용으로 제공된 것은 수십 년도 더 된 오랜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이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는데 안 될 일도 아니지 싶다. 이 사안의 핵심 역시 ‘공익이 우선인가, 당사자 의사가 우선인가?’ 이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개인 의사의 중요성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다. 사전 동의란, 단지 시간상으로 미리 동의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 핵심은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다.

‘윤리경영’,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즘, ‘윤리적 취재’라는 말 또한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윤리적 취재의 진짜 핵심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 레베카 스콜루트,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2010, 문학동네), 185쪽

